제27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0. 4. 2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0년 4월 24일
전문위원 배 금 택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2020 - 25

나. 제 출 자 : 황동현 의원 외 8명

다. 제출일자 : 2020년 4월 10일

라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20일

2. 제안이유

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나.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한국자유총연맹조직조직의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

나. 협조부서: 자치행정과

다. 입법예고(2020. 4. 14. ~ 4. 19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○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

나. 주요 내용

○ 한국자유총연맹 사업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 및 공유시설 무상사용에 대해 규정(안 제3조)

○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
○ 한국자유총연맹 회원과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표창 규정 및 수여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(안 제5조)

다. 종합 의견

○ 본 제정안은 기존의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상, 방법, 범위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되며,

○ 상위법인 『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』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

참고 **관계 법령**

❑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·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·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(이하 "총연맹"이라 한다)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·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·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.

제3조(출연·보조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,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